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·공포(2021. 1. 5.)와 관련 법률 시행령(공포 후 6개월)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119구조견대의 편성·운영 조항 신설(안 제5조의2)

- 소방청장은 119구조견대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·운영하도록 함.(안 제5조의2제1항)
- 소방본부장은 시·도의 규칙에 따라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, 필요한 경우 인접 시·도와 공동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의2제2항)
-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5조의2제3항)
- 안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.(안 제5조의제4항)

나. 119구조견 양성·보급기관의 설치·운영 조항 신설(안 제5조의3)

- 소방청장은 119구조견 양성·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·

운영하도록 함.(안 제5조의3제1항)

- 구조건 양성 · 보급기관의 설치 · 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.(안 제5조의3제2항)

다. 제5조의4(119구조건 및 운용자 등의 인증 · 자격기준) 조항 신설(안 제5조의4)

- 구조건 및 구조건 운용자의 인증 · 자격기준을 정함.(안 제5조의4제1항)
- 구조건 및 구조건 운용자의 인증 · 자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.(안 제5조의4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119구조견대의 편성·운영)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(이하 “구조견대”라 한다.)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·운영한다.

② 소방본부장은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, 필요한 경우 인접 시·도와 공동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5조의3(119구조견 양성·보급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119구조견(이하 “구조견”이라 한다.)의 양성·보급을 위한 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·운영한다.

② 구조견 양성·보급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5조의4(119구조견 및 운용자의 인증·자격 기준) ① 구조견 및 구조견

운용자는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이수하고 인증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, 인증평가시험의 과목, 방법 등 인증·자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호 중 “인명구조견”을 “119구조견”으로 한다.

②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119구조견대의 편성 · 운영)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(이하 “구조견대”라 한다.)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 · 운영한다.</u> <u>② 소방본부장은 시 · 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, 필요한 경우 인접 시 · 도와 공동으로 편성 ·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③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3(119구조견 양성 · 보급기관의 설치 · 운영)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119구조견(이하 “구조견”이라 한다.)의 양성 · 보급을 위한 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 · 운영한다.</u>

<신 설>

② 구조건 양성·보급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5조의4(119구조건 및 운용자의 인증·자격 기준) ① 구조건 및 구조건 운용자는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이수하고 인증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, 인증평가시험의 과목, 방법 등 인증·자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119구조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611